

금융상품 신청서

상품명 : 자동차리스 할부 대출 기타()
 계약 번호 : 계약 후 별도 기입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본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 할부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 이용자 사항 (개인 개인사업자)

1. 필수기재사항

고객정보 (필수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지							E-mail	
	실제거주지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계좌	은행 (본인 계좌에 한함)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청구서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지/ <input type="checkbox"/> 실제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함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층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치 않음								
*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연월일					업태/종목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직장/사업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지						직장(사업장)전화번호		
직종	연소득금액					재직(사업)기간			

2. 선택기재사항

*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본 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기재사항	*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계약 <input type="checkbox"/> 파견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택소유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주기간	년		개월	세대주 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단독			
	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고급빌라 <input type="checkbox"/> 연립/다세대/빌라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원룸							
	주요소득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기타							
	*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결제계좌	은행			예금주명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기타사항

기타 추가 사항	국적	(외국인일 경우에만 기재)
----------	----	----------------

■ 이용자 사항 (법인)

1. 필수기재사항

고객정보 (필수기재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사업자등록연월일						업종	
	결제계좌	은행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청구서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지/ <input type="checkbox"/> 실제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법인 담당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성명	부서					전화번호		

■ 고지사항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뒷면 자동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귀사와 본인이 개설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즉 즉시출금을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대출금 한도 확인을 위해 귀하의 직장정보, 소득정보 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금주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서명 또는 (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www.vwfs.co.kr/vw



매도인	딜러명/전시장	주소	
	판매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금융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상기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고객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액,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일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 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 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결제방법)

-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 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차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순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계좌이체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채권추심 등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신용관련 분석을 위한 자료 활용 등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음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상담 또는 새로운 상거래 신청 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용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정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정보(직장명, 부서, 직위 등),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이동통신사, 전화(TM) 수신여부, 휴대폰(SMS) 수신여부, 우편물(DM) 수신여부, 음성 데이터.
- 신용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할부금융, 리스계약 정보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위 기간 이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거래종료일이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고객 간의 할부금융계약, 리스계약 등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대상 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공공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등)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주택,직장), 주소(주택,직장), 이메일, 직업직위, 사업자등록번호,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데이터, 식별정보, 본인인증정보
-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대출, 보증정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그 거래의 상품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도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정치처분정보,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 국세 또는 지방세, 관세, 과태료 체납정보, 법원 채무불이행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복권 등에 관한 신청 및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신용회복과 관련된 신청 및 결정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정보, 조달청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수수료 관련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조회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 제공·조회 대상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이 본 동의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모든 채무상환 완료)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조회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조회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계약과 관련하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 및 판매사(영업사원 포함),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알선 관련 업무수탁자, 자동차 리스 중개·알선 관련 업무수탁자, 법무사, 법무 법인, 회계 법인,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 전산 처리 및 개발 유지 보수 업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자동차 공매/이전/등록 업체,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발송 및 반송업체, 신청서 등 문서관리 업체(입력, 스캔, 보관, 폐기), 신용조사/채권추심업체, 결제대금출금 업체, 서비스 품질관리 업체, Email/문자메시지/모바일쿠폰 발송업체, 사은품·판촉물 발송업체, 전화상담 업체, 본인 인증 서비스 업체, 정보변경 서비스 업체, 제휴 서비스사, 자금이체 서비스 대행업체, 보증인, 범죄행위의 고소/고발/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에 의한 수사기관 및 기타 요청기관, 금융사고 방지 기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독일/EU)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선거관리위원회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자서서류대행, 계약의 상담, 체결, 유지, 이행, 관리, 차량 등 담보물 관리 및/또는 계약자 신용평가, 국제회계기준 준수, 금융감독기관 보고, 우편물 제작 및 발송용역, 결제대금 출금, 채권추심,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상담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
- 공동마케팅 비용 정산, 제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정산 등 업무, 저장등록/해지, 차량 정보 조회, 차량 서비스 점검, 전화상담, 사은품 판촉물 발송, 법률자문, 자동차 할부/리스 중개 알선, 자동차 유지관리, 사고대차차급, 자동차 보험 및 사고관리, 과태료/범칙금 처리, 리스반납 차량 처리, 범죄행위 관련 수사 및 조사 협조,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제출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제공대상 업체 현황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 변경 및 세부적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소개 및 권유, 사은행사(경품, 사은품 제공 등), 판촉행사(특판금리 등),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여신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이용권유 방법

전부동의 (전화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유 목적 연락 수신거부등록 시스템 www.donotcall.or.kr)
- ※ 상품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선택적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그룹 내 제휴 차량판매사, 수입사 및 그룹 관계사에 제공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참존오토모티브, 클라쎌오토(주), 마이스터모터스(주), (주)아우토반브이에이지, (주)지이오하우스, 유카로오토모빌(주), 지엔비오토모빌(주), (주)뉴젠모터스, (주)아우토플라츠, 고진모터스(주), 위본모터스(주), (주)태안모터스, (주)코오롱아우토, (주)한영모터스, (유)중산모터스, (주)한서모터스, (주)세양물류중고차사업부, (주)위본중고차사업부, 만트럭서경판매(주), 이글인터내셔널, VTK서울지역부, (주)동호물류, 제이엠모터스, (주)만트럭부산, 이앤조경남, 이앤조울산, 타이포스, 만트럭전남, 천지자동차, 이앤조제주, MTrucks, 미래오토, 크레딧모터스, 붐오토바이, (주)모토로사, (주)컴퍼니레드, (유)쓰리피모터스, 폭스바겐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 (주)에스큐디에이모터스
-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와 고객 편의를 위한 사은행사, 판촉행사, SMS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제공, 텔레마케팅 등의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 제휴 차량판매사, 수입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선택적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실제소유자 확인 양식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1. 개인 고객의 경우

(1) 당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하시는 계약자가 실제소유자이십니까? 예 아니오

(2) “아니오”인 경우, 아래에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실제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계약자 확인 :

서명 또는 (인)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1)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예 아니오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주1}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2}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란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주십시오.

[주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2 제1항 단서의 법인 및 단체 / 주2: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회사 / 단체명	확인자 성명 (서명)	확인자 직책
	서명 또는 (인)	

(2)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단체의 경우 아래 “선택” 기준에 따라 “작성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선택	해당	작성사항 (*외국인의 경우만 기재)				
A. 주주명부상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 (모두 기재 요망)	()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생년월일				
		지분율 (%)	%	%	%	%
		국적				
B. 상기 A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성명 (한글)				
		✓ 성명 (영문)*				
		✓ 지분율 (%) (①의 경우)	%			
		✓ 생년월일				
③ ①, 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 국적				
C. 상기 A, B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 단체 대표자 1인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	()	✓ 성명 (한글)	성명 (영문)*			
		✓ 생년월일				
		✓ 국적				
확인자 정보	회사 / 단체명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	------	------	--------------------------------

설정 대상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최고액 <input type="checkbox"/>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대표이사 : 한스 피터 자이츠 (인)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위임장

수임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 자동차의 근저당권(설정, 말소)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인)	
근저당권 설정자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상호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인)	

[목록]

자동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근저당권 설정인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암고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__ 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_____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 실행 시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 의한 근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사업자등록번호 : 104-86-29244 법인등록번호 : 110111-4385 856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주소 :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근저당권 설정인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암은 기채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__ 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 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 실행 시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 의한 근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사업자등록번호 : 104-86-29244 법인등록번호 : 110111-4385 856



_____년 _____월 _____일

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 _____
주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주소 : _____
주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근저당권 설정인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암은 기차(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_____ 번 채권 최고금액 _____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 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 실행 시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 의한 근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저당물건의 등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사업자등록번호 : 104-86-29244 법인등록번호 : 110111-4385 856



_____년 _____월 _____일

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 _____
주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주소 : _____
주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 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설 대(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율과 지연배상금)

-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을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 전의 일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의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납이자 만금, 상법 제542조(상사법정지출)범위(現 現6문)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사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 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 채무자(개개인)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사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상(다만 한국수출입은행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채화, 용역 (알정된 사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지출 등 제세공과금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회기기 이용수수료
-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를 의함은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는 물건이거나 유리적인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증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등,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 이상 가능
 - 최대주주
 - 자본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상
 -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 대표이사 또는 대표지대, 고등임원 제외)
 - 무한책임사원
 -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우도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 간접신속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속과 관련된 자 (단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 분양계약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 법인인 연대보증인으로 인보하는 경우
-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양수하여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 보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상환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추가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증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의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추가가 있는 때
 -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부도(행위자부도 등)제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관청에 관하여 국제수입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배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칭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 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어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증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담화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의 3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개인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이자 등(원금불상환 또는 원리금불상환형식의 리스로 및 할부금 체위를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인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3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한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통지, 인위 등(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이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제1항 제2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의 제1항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설정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증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정산절차 개시, 결산절차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쟁에 영향을 미칠 법적변동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정보·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충 기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인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동적담보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등,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정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대채무)

-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대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대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연체 채무변제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대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한한금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항의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한금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물건의 상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한한금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대채무만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대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당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금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청구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금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청구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4항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정지인 때
 - 교통·통신의 부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각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금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기에 의한 회수권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충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언약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갚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채무자는 보증인인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에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도착하지 않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며,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시분을 보존하고 또 그 발송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어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기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통지, 인감·서명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통지·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증·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통지,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사무를 금융회사가 분점·지역분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분점·지역분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서,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서, 이를 알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미리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사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채권추심 등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신용관련 분석을 위한 자료 활용 등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음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상담 또는 새로운 상거래 신청 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용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정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정보(직장명, 부서, 직위 등),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이동통신사, 전화(TM) 수신여부, 휴대폰(SMS) 수신여부, 우편물(DM) 수신여부, 음성 데이터.
- 신용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할부금융, 리스계약 정보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위 기간 이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거래종료일이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고객 간의 할부금융계약, 리스계약 등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대상 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공공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등)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택,직장), 주소(주택,직장), 이메일, 직업직위, 사업자등록번호,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데이터, 식별정보, 본인인증정보
-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대출, 보증정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그 거래의 상품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도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정치처분정보,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 국세 또는 지방세, 관세, 과태료 체납정보, 법원 채무불이행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복권 등에 관한 신청 및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신용회복과 관련된 신청 및 결정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정보, 조달청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수수료 관련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조회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 제공·조회 대상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모든 채무상환 완료)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조회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조회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계약과 관련하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 및 판매사(영업사원 포함),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알선 관련 업무수탁자, 자동차 리스 중개·알선 관련 업무수탁자, 법무사, 법무 법인, 회계 법인,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 전산 처리 및 개발 유지 보수 업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자동차 공매/이전/등록 업체,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발송 및 반송업체, 신청서 등 문서관리 업체(입력, 스캔, 보관, 폐기), 신용조사/채권추심업체, 결제대금출금 업체, 서비스 품질관리 업체, Email/문자메시지/모바일쿠폰 발송업체, 사은품·판촉물 발송업체, 전화상담 업체, 본인 인증 서비스 업체, 정보변경 서비스 업체, 제휴 서비스사, 자금이체 서비스 대행업체, 보증인, 범죄행위의 고소/고발/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에 의한 수사기관 및 기타 요청기관, 금융사고 방지 기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독일/EU)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선거관리위원회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자서서류대행, 계약의 상담, 체결, 유지, 이행, 관리, 차량 등 담보물 관리 및/또는 계약자 신용평가, 국제회계기준 준수, 금융감독기관 보고, 우편물 제작 및 발송용역, 결제대금 출금, 채권추심,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상담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
- 공동마케팅 비용 정산, 제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정산 등 업무, 저장등록/해지, 차량 정보 조회, 차량 서비스 점검, 전화상담, 사은품 판촉물 발송, 법률자문, 자동차 할부/리스 중개 알선, 자동차 유지관리, 사고대차차급, 자동차 보험 및 사고관리, 과태료/범칙금 처리, 리스반납 차량 처리, 범죄행위 관련 수사 및 조사 협조,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제출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동의사항은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제공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제공대상 업체 현황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 변경 및 세부적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소개 및 권유, 사은행사(경품, 사은품 제공 등), 판촉행사(특판금리 등),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여신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이용권유 방법

전부동의 (전화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유 목적 연락 수신거부등록 시스템 www.donotcall.or.kr)

※ 상품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선택적 수집, 이용 본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그룹 내 제휴 차량판매사, 수입사 및 그룹 관계사에 제공

동의 미동의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참존오토모티브, 클라세오토(주), 마이스터모터스(주), (주)아우토반비에이제, (주)지이오하우스, 유카로오토모빌(주), 지엔비오토모빌(주), (주)뉴젠모터스, (주)아우토플라츠, 고진모터스(주), 위본모터스(주), (주)태안모터스, (주)코오롱아우토, (주)한영모터스, (유)중산모터스, (주)한서모터스, (주)세양물류중고차사업부, (주)위본중고차사업부, 만트럭서경판매(주), 이글인터내셔널, VTK서울지역부, (주)동호물류, 제이엠모터스, (주)만트럭부산, 이앤조경남, 이앤조울산, 타이포스, 만트럭전남, 천지자동차, 이앤조제주, MTrucks, 미래오토, 크레딧모터스, 붐오토바이, (주)모토로사, (주)컴퍼니레드, (유)쓰리피모터스, 폭스바겐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 (주)에스큐디에이모터스
-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와 고객 편의를 위한 사은행사, 판촉행사, SMS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제공, 텔레마케팅 등의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 제휴 차량판매사, 수입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제공 본인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 선택적 제공 본인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http://www.vwfs.co.kr>의 공시자료)고객정보보호)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딜러:	전시장:	판매담당자:	금융담당자:
-----	------	--------	--------

세이프플랜서비스 가입 동의서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갱신형)]

[금융회사/보험사보관용]

■ 고객(피보험자 = 할부금융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직무내용
전화번호	할부금융자금(대출금액)
할부금융사	

■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 이 보험은 BNP파리바 카드프생명보험(주)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갱신형))이며, 보험계약자는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입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 피보험자(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갱신형)) 가입에 동의하시고 할부 시작일이 보장 개시일이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서 부담합니다(할부금융이용자 부담 없음).
- 보장금액 : 사망 및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애진단 시점의 할부금융자금 잔액의 100% (3억원 이내)를 보장해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 : 수익자는 금융기관(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해당 대출원리금을 변제합니다.
- 할부금융계약의 만기와 보험계약의 효력 :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갱신)이며, 할부 만료 시에 보험계약도 만료됩니다. 다만, 할부 기간이 만료되어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연장하는 경우에만 보험은 자동연장(갱신)되며 할부만료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보험 조건이 변경되거나, 보험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탈퇴 : 이 보험을 중도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은 탈퇴 신청하신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가입에 동의하실 때에는 아래의 질문사항에 따라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등 회사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바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위 내용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 여신거래약정서(가계약, 기업용), 추가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아래 질문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아니오
1.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0대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경색, 뇌출혈) ⑨ 당뇨 ⑩ 에이즈 및 HIV보균 (의료행위) ⑪ 질병확정진단 ⑫ 치료 ⑬ 입원 ⑭ 수술 ⑮ 투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미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 ⑥ 투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할부금융이용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를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BNP파리바 카드프생명보험(주)와 상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험의 주요 내용인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할부금융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상의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피보험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계약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 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 체결 · 유지 · 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 · 심사
 - 손보험료율의 산출 · 검증,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적부 및 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모집 절차의 유지,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 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 ·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료산출기관에서 수집 · 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사고 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 수납) 관련 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 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 체결 · 유지 · 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 · 심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 ·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료산출기관에서 수집 · 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사고 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료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 · 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 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 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단업체, 계약적부조사업체 등)
- 단체(단체취급보험)의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중보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 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 ·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서비스,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 내용(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cardi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 · 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질병 · 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피보험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